

포스텍 영재기업인교육원 이수 기준

1. 교육생 이수 기준(교육생용)

교육	이수 기준
온라인 교육	<p>온라인 교육 이수 기준은 필수 과제 제출 여부와 기타 기준에 의거한다.</p> <p>1. 필수 과제 제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2년 과정 중 총 4학기에 해당하는 온라인 교육의 필수 과제는 모두 제출함을 기본 원칙으로 하며, 미제출 시 퇴원 조치한다. - 단, 필수과제 기한 미 준수는 한 학기에 2회까지 허용한다. - 필수 과제의 제출 기한 후 교육원이 제시한 연장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미제출로 간주한다. - 특정 필수 과제의 경우 교육원 내부의 평가를 거쳐 일정 수준 이하라고 판단될 경우 제출 재요청을 할 수 있다. - 교육원의 재요청이 있을 시 교육원이 제시한 기한 내에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지 않거나 여전히 일정 수준 이하라고 판단될 경우 미제출로 간주한다. - 단, 온라인 교육(필수 과제 제출)을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교육원에 즉시 알림으로써 센터장의 승인을 받아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 <p>2. 기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온라인 교육예절수칙[첨부1]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감점 및 퇴원 조치한다.
오프라인 교육	<p>오프라인 교육 이수 기준은 집중교육 참가 여부와 기타 기준에 의거한다.</p> <p>1. 집중교육 참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2년 과정 중 총 4회의 집중교육에 모두 참가함을 기본 원칙으로 하며, 불참 시에는 퇴원 조치한다. - 단, 아래의 각 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를 두어 집중교육 1회에 3일 이내의 불참은 허용하며, 총 4회의 집중교육 중 2회까지로 제한한다. 가. 지진, 폭우, 폭설, 폭풍,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전염병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

- 나. 사망 및 탈상에 해당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[첨부3]
 다. 중대한 질병으로 인해 출석하지 못한 경우
 라. 정규 교육 과정에 대한 입시로 인해 출석하지 못한 경우
 마.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센터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
- 위의 "나", "다", "라", "마" 항에 해당하는 경우
- 1) 교육원에 알려야 하며 해당 학기 교육 이수 전에 불참 사유서[첨부4]와 함께 반드시 관련 증빙서류(의사 진단서, 수험표 등)를 제출해야 한다.
 - 2) 부득이한 사정으로 해당 학기 교육 이수 전에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을 경우 교육원과 협의하여 제출 기한을 정하도록 한다.
- 이 외에 고의로 불참한 경우, 불참 사유서를 제출하더라도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불참할 경우는 퇴원 조치한다.
2. 기타
- 가. 오프라인 집중 교육의 참가비를 미납할 경우 퇴원 조치한다.
 - 나. 오프라인 교육생활 수칙[첨부2]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감점 및 퇴원 조치한다.

2. 이수기준 내부 절차

교육	내용		
온라인 교육	1. 필수과제 제출 기한 미준수 시		
	미준수 횟수	조치 내용	비고
	1회	-	· 학기별 갱신 ex)봄 학기에 2회 미준수 -> 가을 학기에 2회 미준수 : 상관없음
	2회	-	· 학기에 상관없이 누적 ex)봄 학기에 3회 미준수 -> 가을학기에 3회 미준수 : 미준수 횟수 4회에 대한 조치 취함
	3회	교육생 경고	
4회	학부모 및 교육생 서약서		
오프라인 교육	1. 오프라인 교육생활 수칙 미준수 시		
	상황	조치 내용	비고
	퇴원	· 1단계: 교육생 경고 · 2단계: 교육생 및 학부모 서약서	

[첨부 1]

※온라인 교육예절 수칙

1. 게시판의 용도에 부적합한 글을 게시한 경우
2. 특정 사이트 가입(교육원에서 공식적으로 개설하지 않은 사이트)을 유도하는 글을 게시한 경우
3. 회원 간 욕설 및 비방(특정 회원 지칭) 글을 게시한 경우

[첨부 2]

※오프라인 교육생활 수칙

구분	내용	신용 점수
청소 및 정리 상태 불량	공동 사용 장소 개인사물(세탁물 등) 방치	-500
	간식 후 뒷정리 불량	-500
	퇴실 처리 불이행(청소, 비밀번호 초기화 등)	-500
소란 행위	취침시간이후 이동, 타인침실에서 소란 및 취침	-1,000
	실내 또는 독서실 잡담 및 소란	-500
	도박, 흡연, 음주 행위	퇴원
	교우 간 폭행	-1,000
시설물 및 소지품 휴대 위반	인화물질 위험물질 침실 반입자	-1,000
	공고물 및 시설물 파손	현금배상
	수업 중 휴대폰 사용(통화 및 문자 등)	-500
양심 불량	타인의 물건 허락 없이 손대는 자	-500
공중도덕 및 기본생활태도 불량	혐오스럽거나 야한 복장 용모 행동	-500
	남녀관계 불미스러움	퇴원
	외부인을 동행 시킨 자	퇴원
일과표 미 준수	무단 외박·외출자	퇴원
	단체행동 이탈 (10분 이상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)	-1,000
	지각	-1,000
	점호 불이행	-1,000
기타	교칙, 교사지시 불이행(위반사실 불인정)	퇴원

[첨부 3]

※사망 및 탈상

구분	대상	일수
사망 및 탈상	부모 및 (외)조부모	3
	(외)조부모를 제외한 부모의 직계존속	3
	부모의 형제·자매 및 그의 배우자	3
	부모의 백숙부모	3
	형제·자매 및 그의 배우자	3